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운영지침 개정 공고

2013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 하오니 사업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사항

- 최종평가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성·객관성 제고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개정 전	개정 (안)
수출역량 강화사업 운영지침	제17조(최종보고 및 평가) ③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최종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최종보고 및 평가) ③지방청장은 <u>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u>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최종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성과목표제 이행력 제고를 위해 수행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요건 강화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개정 전	개정 (안)
수출역량강 화사업 운영지침	제21조(보조금 교부 제외 등) ①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22조(참여제한) ② 청장은 수출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업의 수행기관 참여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 교부 제외 등) ①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u>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삭제)</u> 제22조(참여제한) ② 청장은 수출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업의 수행기관 참여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u>6.(신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u>

○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사업수행 의욕 고취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개정 전	개정 (안)
수출역량 강화사업 운영지침	<p>제17조(최종보고 및 평가) ③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최종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우수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내수 중소기업이 첫 직수출에 성공(10만불 이상)한 경우</p> <p>나. 전년도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기업이 수출역량강화사업 당해 사업연도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p>	<p>제17조(최종보고 및 평가) ③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최종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우수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예비수출기업 중 내수 중소기업이 첫 직수출에 성공(10만불 이상)한 경우</p> <p><u>나. 전년도 직수출실적 보다 당해 사업연도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u></p>

<붙임> 수출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운용지침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운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다.

2013. 6. 18

중소기업청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이하 “수출역량강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기업”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라 함은 수출역량 강화사업의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의 위탁을 받아 해외시장 개척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지정형 수행기관”과 청장이 지정하지 않고 참여기업이 임의 선택한 “개방형 수행기관”으로 구분한다.
3. “사업비”라 함은 참여기업이 수출역량강화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보조금”과 “부담금”으로 조성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성공률 제고를 위해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중소기업 수출기업역량강화 지원

제1절 사업신청 및 선정

제3조(사업구분) 수출역량강화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예비수출기업 지원
2. 수출유망기업 지원
3. 글로벌강소기업 지원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① 청장은 매년 수출역량 강화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 규모
2.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세부사업 참고자료
3. 지원방법 및 절차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별표 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 포함)으로서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예비수출기업 지원”은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직수출(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이 10만불 이하인 기업
 2. “수출유망기업 지원”은 직전 사업연도 직수출(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이 10만불 초과 500만불 이하인 기업
 3. “글로벌강소기업 지원”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2. 상위단계에 1회이상 참여한 기업이 하위단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4. 휴·폐업중인 기업

제6조(신청서의 제출) ①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기업의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청한다.)

1.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
2. 개인 또는 법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최근 2년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다만 제출이 불가능한 신생기업의 경우 관련된 재무건전성 평가는 별표 3 및 별표3-1의 신생기업 적용기준에 따른다.

② 지방청장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조치(회신)가 없으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서류심사 및 현장진단·평가) ① 지방청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서류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서류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기업
3. 제5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4. 직전 사업년도 동 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청장이 승인한 정부 보조금을 30%이상 집행하지 않았거나, 자료제출 및 심사(제19조 제1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기업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동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서 참여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신청한 기업

② 지방청장은 서류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내지 별지 제8호의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신청기업 현장평가표”에 의거 현장진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장진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지원을 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신청당일 기준)

2. 직전 사업연도 동 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기업

3.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업체로 선정된 기업

③ 현장평가자는 지방청 소속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전문가를 2인 1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지방청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직원 또는 전문위원

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직원

3. 지방청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지역수출자문봉사단, 수출도우미 등)

4. 기타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참여기업 선정) ①청장은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예비수출기업 지원과 수출유망기업 지원에 대하여 신청기업수, 직전연도 수출성과, 직전연도 사업비 집행실적, 지역균형 등을 감안하여 지방청별 참여기업수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글로벌강소기업 지원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② 지방청장은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사업에 대해 신청기업에 대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진단·평가결과 55점이상인 기업을 점수 순위로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2절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지원

제9조(사업설명회)①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이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 대표 또는 해외마케팅 담당 임직원은 설명회에 1인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설명회 참석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통지)① 참여기업은 설명회 개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진단을 실시한 자(지방청 직원 및 수출전문가)와 협의하여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수행기관, 수출단계별로 허용되는 세부사업별 수행금액 등이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2.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진확약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지방청장은 추진계획서의 세부사업 승인(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승인통지서”(이하“승인통지서”라 한다)를 참여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항의 승인통지서를 받은 참여기업은 해외전시회 참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이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설계지원 및 후견인제) ① 참여기업을 진단한 지방청 직원 및 수출전문가는 별표 2의 수출역량강화 세부사업내용을 참조하여 당해기업에 적합한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세부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을 진단·설계 지원한 지방청 직원 및 수출전문가는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성공률 제고를 위해 동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기업의 전담 후견인으로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비의 사용 및 보조금 신청

제12조(사업비의 조성) ①수출역량강화사업 각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되 전액 현금으로 분담한다.

② 정보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3조제1호의 예비수출기업 지원사업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의 90%이하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수출유망기업 지원사업은 3,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의 70%이하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업체 지원사업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의 50%이하로 한다.

③ 참여기업은 지정형 세부사업의 경우 기업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세부사업 착수와 동시에 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각 호의 국고 보조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별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참여기업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법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과 회사명 공동표기)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개방형 세부사업 참여기업 또는 지정형 세부사업 수행기관은 세부사업 추진 완료분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지방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3~14호 서식)
2. 별표 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 사본(대표자 원본 대조필)

② 보조금 교부신청은 최초 승인한 추진계획서를 근거로 지방청장이 승인한 세부사업 및 변경 승인한 사업 중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완료(사업비 지출)된 사업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 10월 30일까지 교부 신청한다.

제4절 보조금 지급 및 확정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① 지방청장은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한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세부사업결과물 및 지출근거서류의 이상 유무
3.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 신청액 확인(세부사업별 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승인액)
4. 수출역량강화사업 세부사업 추진계획과 일치여부

② 지방청장은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조금지급 :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지방청장이 승인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
2. 보완조치 : 일부 시정명령으로 수출역량강화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불가 :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시정명령으로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함)을 포함한 별지 제15호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부사업에 대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유관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5조(중간평가 등) ① 지방청장은 매년도 7월말까지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라 참여기업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중간점검 결과 참여기업의 사업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비를 활용하여 후보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① 지방청장은 교부 결정된 보조금을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완료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산서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세부사업 계약 등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인 결정된 총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 지급할 수 있다
- ③ 천원단위 미만의 보조금은 절사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사업비 지출근거서류 외에 사업완료 보고서 등을 정산마감기일이내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입금영수증 등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지방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최종보고 및 평가) ① 참여기업은 당해사업연도에 수출역량강화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의“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최종보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으로부터 보조금교부 신청서, 최종보고서를 종합하여 법령의 규정, 지방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운영지침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최종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우수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내수 중소기업이 첫 직수출에 성공(10만불 이상)한 경우
 - 나. **전년도 직수출실적 보다 당해 사업연도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
2. 성공기업 :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수출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완료한 경우

3. 미흡기업 : 제2항의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수출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5절 사업계획 변경 및 사후관리

제18조 (사업계획 변경) ① 참여기업은 경영여건 및 수출환경의 변화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2회의 범위 안에서 지방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유관기관에 위탁한 세부사업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1. 세부사업의 변경
2. 세부사업 수행기관의 변경
3. 세부사업 추진금액의 변경

② 참여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의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세부사업 변경요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변경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세부사업 변경요청서 검토결과 통지서"를 참여기업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제출 및 심사) ① 지방청장은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수출역량강화사업 추진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참여기업 후견인(진단·설계지원자)으로 하여금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변경요청서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운영지침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현장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수행 성과목표) 청장은 사업수행 결과물의 부실 우려가 있는 세부사업에 대하여 별표 4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 교부 제외 등) ①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 하는 경우
4.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법령 또는 운영지침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참여기업이 수출역량강화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수행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댓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8.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② 지방청장은 이미 보조금 교부 확정된 금액 중 위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시 그 기한을 정하여 그 회수할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반환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절차, 이의 신청 및 벌칙 등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명령 및 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참여제한) ①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이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수출지원사업의 참여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수출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업의 수행기관 참여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참여기업에 부당 알선, 고의적 허위 정보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참여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참여기업에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허위 계산서 발행 등 사업수행 결과 조작이 확인된 경우
5. 참여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수행기관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30% 이상 “보통 이하”로 평가한 경우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23조(이의신청) ①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청장 또는 지방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추진 보고) ①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처분 등의 행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수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재확정) 한 경우
3.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경우
4.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보조금의 확정을 완료한 경우

② 수행기관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별지 제19호의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세부사업 추진 성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2조제2항에 준하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보조금 회수금액의 사용) 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회수금액(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출성과가 높은 참여기업의 수출역량강화사업 세부사업의 추가 지원
2. 참여기업의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 수출역량강화 세부사업 이외의 해외 마케팅 및 통·번역 지원
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출지원사업

- 제26조(온라인에 의한 사업관리 등)** ① 청장은 수출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평가, 사업의 변경·승인 및 최종보고 등을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동 사업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의 연계지원

제27조(연계사업 지원) ① 지방청장은 평가결과 성실수행으로 수출성과가 가시화된 참여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또는 수출금융(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대상에 추천하여 연계지원 할 수 있다.

- ②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의 연계지원 후속조치를 위하여 지원 후 2년간 수출실적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수출네트워크결성·지원) ① 청장은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수출기업 등 수출 중견·초보기업이 참여하여 정보 및 경험, 해외마케팅 Know-How 등을 공유·전파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청장은 지방청장 등이 추천한 수출네트워크 활동성과·계획 등을 평가하여 연간 네트워크 지원계획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 ③ 수출네트워크는 수출 초보기업 육성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지원 한도 내에서 회의, 정보수집, 현장견학, 마케팅기법 전수 등 협력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수출중소기업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지방청장 및 해외진출기업네트워크 관리기관은 청장에게 네트워크 결성 추진계획을 활동개시 10일전 보고하고 추진성과를 활동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지방청장 및 수행기관은 수출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참여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과 2011년과 2012년 수출초보기업 참여기업은 예비수출기업지원 참여기업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 1호 서식】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신청서

기업명*		업태/종목*	/
		표준산업분류번호*	
대표자*		대표 e-mail*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휴대전화*	
설립년도*	년 월 일	홈페이지*	http://www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공장			
지점(1)			
지점(2)			
담당자*	성명/직위	휴대전화	
	전화번호	FAX	
수출업력* : 년	사업참여이력 : 신규(), 재신청()회(참여년도:)		
구분	2010년	2011년	해외마케팅 조직(√)*
매출액(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있음(), 없음()
수출액(천불)*	(‘11년) 천\$	(‘12년) 천\$	부서명 : 주요 인력 운영(√)*
수출방식*	① 자체브랜드	천\$	천\$
	② OEM, ODM	천\$	천\$
연구개발 조직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지정년도 년), R&D 전담조직 운영(), 실험실 형태 운영(), 없음()			
수출품목명*	현재		
	계획		
수출국가명*	현재		
	계획		

당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생략)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한국무역협회 등이 발급한 등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사본

* : 필수입력사항입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중소기업청은 “수출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청]의 “수출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 이용됩니다.

②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거래실적)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
- 단, 신용정보 제공 ·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조회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③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를 거부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담당자용)

중소기업청은 “수출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중소기업청]의 “수출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 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④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신청유형	예) 예비수출기업 지원	
F A X				정부 지원비율	예) 90%	
	세부사업	추진기간	수행기관	신청사업비	기업부담금(예정)	정부지원금(예정)
1		~				
2		~				
3		~				
4		~				
5		~				
.		~				
.		~				
.		~				
.		~				
합계	세부사업 신청 ()건					

상기내용은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진단·설계지원자의 안내를 받아, 최종적으로 기업 자체판단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확인하며, 위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맞게 추진할 것과 지방중소기업청장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여 추진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생략)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진확약서(참여기업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성실히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정부 보조금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승인통지서」 상의 세부사업 용도에만 사용하며, 세부사업집행은 2013년 10월말까지 종료한다.
2.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보조금 교부(정산)신청시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시 사업비(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의 지출내역서 등을 거짓 없이 성실하게 제출한다.
3.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일로부터 보조금을 7일 이내에 반환한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승인통지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전 화		선정유형	예) 예비수출기업 지원
F A X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예) 90%
	세부사업	수행기관	승인/반려
			승인사업비
			기업부담금(승인)
			정부지원금(승인)
1			
2			
3			
4			
5			
.			
.			
.			
.			
합 계		세부사업 승인 ()건	
승인조건 /반려사유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세부사업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하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중소기업청장

(직인생략)

○○○○○○기업 대표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보조금 교부 통지서

기업명 (수행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전화				
보조금 입금계좌	예금주명	은행(지점)명				
	계좌번호					
	세부사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사업비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비고
1						
2						
3						
4						
5						
합계	정산신청 ()건		정부보조금 지급금액		천원	
비고 (조건승인 등)						
<p>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세부사업 보조금 교부(정산)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지방중소기업청장 (직인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기업(수행기관) 대표 귀하</p>						

※ 개방형사업은 참여기업에 지정형사업은 수행기관에 통보

【별지 제16호 서식】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세부사업 변경요청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변경사유			
기대효과			
변 경 전		변 경 후	
<p>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세부사업의 변경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생략)</p> <p>○○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p>			

【별지 제17호 서식】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세부사업 변경요청 검토결과 통지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휴대전화	
변 경 요 청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효과)		
검 토 결 과	승인여부	1. 승인 2. 조건부 승인 3. 미승인	
	검토내용		
	조건		
<p>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세부사업 변경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지방중소기업청장 (직인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 대표 귀하</p>			

【 별표 1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번호	해 당 업 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7911	전자상거래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 별표 2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세부사업별 수행기관 및 지원한도

1. 예비수출기업

분야	세부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지원한도
① 수출교육	무역실무기초과정		과정별 교육비의 90%
	온라인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환리스크 관리과정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② 홍보디자인 개발지원	외국어 전자 카다로그		통합한도 700만원
	외국어 종이 카다로그		
	외국어 동영상		개별한도 500만원
	외국어 포장디자인		
③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 시장조사		300만원
	온라인 수출지원		300만원
	해외 신용조사		100만원
	국내외 홍보 전문지를 활용한 해외에 상품홍보		통합한도 400만원
	무역비용 규제시물레이션(TCS)		50만원
④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통합한도 1,000만원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150만원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200만원

* 예비수출 및 수출유망기업지원 참여기업은 수출교육의 무역실무기초과정, 온라인 실무기초과정, 전략시장진출과정, 환리스크 관리과정 중 1개과정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함(다만, 관련과정을 이미 이수한 경우 제외 : 수료증 등 관련자료 제출)

2. 수출 유망기업 지원

분야	세부사업	수행기관	비고
① 수출교육	무역실무기초과정		과정별 교육비의 70%
	온라인 무역실무 기초과정		
	국제무역 전문가과정		
	환리스크 관리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② 홍보디자인 개발지원	외국어 전자 카탈로그		통합한도 700만원
	외국어 종이 카탈로그		개별한도 500만원
	외국어 동영상		
	외국어 포장디자인		3,000만원
	제품 디자인		
③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 심층 시장조사		1,000만원
	온라인 수출지원		300만원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		100만원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환변동보험		통합한도 100만원
	해외 신용조사		100만원
	국내외 홍보 전문지를 활용한 해외 에 상품홍보		통합한도 400만원
	공중파 해외광고(arirang TV)		400만원
	무역비용 규제시물레이션(TCS)		50만원
④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통합한도 1,000만원
	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마케팅		500만원
	글로벌 브랜드 개발		3,000만원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200만원

3.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분야	세부사업	수행기관	지원한도
① 홍보디자인 개발지원	제품 디자인개발 사업		3,000만원
	포장 디자인개발 사업		300만원
②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 진출전략 컨설팅		2,000만원
	글로벌 경영 컨설팅		5,000만원
	자율 마케팅 프로젝트		2,000만원
③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통합한도 1,000만원
	글로벌 브랜드 개발		5,000만원
	홈쇼핑 동영상 제작		2,000만원

* 글로벌 강소기업은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계획”의 지원내용을 우선함

【 별표 3 】

에비수출기업 지원사업 세부평가 기준표(제조업)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25)	수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 가능성	10	주 생산품목 또는 개발품목의 글로벌 시장 성장 가능성 ▶ 매우 낮음(2) 다소 낮음(4) 보통수준(6) 다소 높음(8), 매우 높음(10)
	경쟁력 품질/디자인 경쟁력	10	국내외 규격·품질인증(KS, UL, CCC, CE, FDA, GOST, ISO 등) 획득 및 국내외 디자인 인증(GD 등), 국내외 발명·상품 경진대회 수상(3년이내) 등 ▶ 건당 1점
	가격경쟁력	5	국내외 동업종 제조사 대비 가격비교 ▶ 매우 낮음(1) 다소 낮음(2) 보통수준(3) 다소 높음(4), 매우 높음(5)
(20)	기술 연구개발조직·인력	5	자체 연구개발 조직·연구인력 없음(1), 자체 연구개발 조직·연구인력 보유(3),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5)
	연구개발비 투자	5	*직전사업연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 1%미만(1), 1-2%미만(2), 2-3%미만(3), 3-4%미만(4) 4%이상(5), 신생기업(3점)
	산업재산권 등 보유	5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저작권) 보유 * 특허권은 1건당 3건으로 간주, 수출(예정)상품 국제특허권 보유시 5점 처리 ▶ 건당 1점
(55)	제품의 기술수준 및 개발단계	5	기술개발 수행능력 없음(1), 기술도입 및 개발단계(2), 자체·공동 또는 위탁기술 개발(3),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성공(4), NET(신기술 인증, 5)
	경영 능력의 수출 의지	15	*수출타깃국가 설정, 타깃시장 조사, 경쟁제품 비교분석(기술·가격·품질)의 신빙성, 해외마케팅 예산확보, 수출계획 수립 및 추진상태 등을 평가 ▶ 매우 낮음(3), 다소 낮음(6), 보통(9), 다소 높음(12), 매우 높음(15)
	수출 준비도	15	①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②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③해외상품홍보지 광고, ④해외영업 및 외국어 능력 갖춘 전담자 보유, ⑤해외전시회 참가, ⑥해외시장개척단 참가, ⑦국내에서 개최한 국제전시회 참가, ⑧해외시장 조사실적(유관기관수행) ▶ 건당 2점
	성장성(재무평가)	5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 3%미만(1), 3%이상~7%미만(2), 7%이상~11%미만(3), 11%이상~15%미만(4), 15%이상(5), 신생기업(3점)
	수익성(재무평가)	5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100)/매출액}을 평가. ▶ 3%미만(1), 3%이상~5%미만(2), 5%이상~7%미만(3), 7%이상~9%미만(4), 9%이상(5), 신생기업(3점)
	수출(예정) 상품의 시장 단계	5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예정) 품목으로 평가 ▶ 시제품 제작단계(1), 상품화 단계(2), 국내시장 출시단계(3), 국내매출 실현 단계(4), 해외매출 실현단계(5)
	해외마케팅 전담 조직·인력	5	전담조직·인력이 없음(1), 조직·인력이 있으나 형식적이고 수출활동수행에 한계(3), 조직·인력이 회사규모에 적정하고 수출활동 수행에 적합(5)
혁신성 평가 등	5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및 승인협업 참여기업, 농공상 융합기업 ▶ 건당 2점, 최대 5점	
총 계		100	

※ 신생기업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기본 3점으로 하되 평가항목상에 점수가 높은 경우 이를 적용

【 별표 3-1 】

예비수출기업 지원사업 세부평가 기준표(서비스업)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기준
수출 경쟁력 (20)	해당서비스 수출 적합성	5	해당(업종)분야의 서비스형태가 수출에 적합한지 여부 ▶ 매우 낮음(1) 다소 낮음(2) 보통수준(3) 다소 높음(4), 매우 높음(5)
	서비스경쟁력	10	해당 서비스 품질 평가 ▶ GS(굿소프트웨어), SQ(서비스품질우수기업), ISO9001, ISO14000, 지적재산권, S/W관련 프로그램 등록(항목당 1점)
	가격경쟁력	5	국내외 경쟁사 대비 서비스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매우낮음(1), 다소낮음(2), 보통수준(3점), 다소높음(4), 매우높음(5점)
서비스역량 (25)	서비스 전담인력 규모	5	해당서비스 전담인력 비중 및 인원수(해당사항관련 기준 적용) ▶ 20%이상(5점), 20~10%(3점), 10%이하(1점) ▶ 10인이상(5점), 10~5인(3), 5인이하(1점)
	서비스 전담인력 전문성	5	해당 서비스 전담인력의 평균근속연수(2) ▶ 3년미만(1점), 3년이상(2점) 해당 서비스 전담인력의 평균적인 국가 및 관련단체 발급자격증(ex정보통신기술자, 컨설턴트 자격증 등) 보유여부(3) ▶ 1개 이하(1점) 2개(2점), 3개이상(3점)
	고객정보 및 지식관리	5	해당서비스에 대한 고객관리 및 서비스 개선 노력 ▶ 매우 낮음(1) 다소 낮음(2) 보통수준(3) 다소 높음(4), 매우 높음(5)
	서비스 차별성	5	해당업체의 서비스가 동종업체 대비 조직화 및 납기준수역량 수준 ▶ 매우 낮음(1) 다소 낮음(2) 보통수준(3) 다소 높음(4), 매우 높음(5)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	5	직전사업연도 총 매출액/연구개발비(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 포함) ▶ 3%미만(1), 3-5%미만(3) 5%이상(5), 신생기업(3점)
경영능력 및 수출의지 (55)	경영자의 수출의지	15	수출타깃국가 설정, 타깃시장 조사, 경쟁서비스 비교분석의 신빙성, 해외마케팅 예산확보, 수출계획 수립 및 추진상태 등을 평가 ▶ 매우 낮음(3) 다소 낮음(6) 보통수준(9) 다소 높음(12), 매우 높음(15)
	수출 준비도	15	①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카탈로그 보유 ② 외국어 전담인력 보유 ③ 국내외 전시회·시개단 참가, ④ 해외 영업망 및 네트워크 보유여부 ⑤ 타겟시장조사 및 수출관련 전문기관 상담실적 ▶ 해당 항목당 2점 부여(항목당 한 개라도 해당되면 점수인정)
	해외마케팅 전담조직·인력	5	해외마케팅 전담인력보유(2점), 해외마케팅 전담조직 보유(3점)
	수출서비스 성장단계	5	해당 서비스의 수출 성숙도 여부를 평가 ▶ 국내 시장출시 단계(1), 국내 매출실현 단계(3), 해외 매출실현 단계(5)
	수익성(재무평가)	5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100)/매출액}을 평가. ▶ 3%미만(1), 3%이상~5%미만(2), 5%이상~7%미만(3), 7%이상~9%미만(4), 9%이상(5), 신생기업(3점)
	성장성(재무평가)	5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 3%미만(1), 3%이상~7%미만(2), 7%이상~11%미만(3), 11%이상~15%미만(4), 15%이상(5), 신생기업(3점)
	가점	5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및 승인협업 참여기업, 농공상 융합기업 ▶ 건당 2점, 최대 5점
총계		100	

※ 신생기업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기본 3점으로 하되 평가항목상에 점수가 높은 경우 이를 적용

【 별표 3-2 】

수출유망기업 지원사업 세부평가 기준표(제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수출신장유망성 (45점)	수출실적	15	50만달러미만(9) 70만달러미만(11점) 100만달러미만(12점) 200만달러미만(15점) 300만달러 미만(12점) 500만달러 미만(9점)		
	수출신장율	15	○ 전년도 수출액 200만불이상 100%이상(15점), 50%~100%미만(12점), 10%~50%미만(9점), 10%미만(6점) ○ 전년도 수출액 200만불 미만 100%이상(15점), 70%~100%미만(12점), 40%~70%미만(9점), 10%~40%미만(6점), 10%미만(4점)		
	품질·수출경쟁력	연관 기술의 인증	5	NET, NEP, 성능인증 * 수출품목의 인증(5점), 인증은 받았으나 수출품이 아닌 경우(3점), 인증을 추진 중인 기업(1점)	
		국내외 규격인증	5	○ 국내 : KS, GS, Single PPM 품질인증, ASP인증, AS, K, Q, GD, EK(전기안전인증), S(안전인증), KPS(안전인증), SQ(서비스품질우수기업), 조달우수제품, GR, 친환경제품, 에너지마크제품 ○ 국외 : 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해당 인증분야 및 ISO9001, ISO14000 * 인증규격 개수당 1점씩 가산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5	수출품목에 대한 국내·외산업재산권 보유(5점), 수출품목에 대한 국내산업재산권 보유(4점), 산업재산권은 보유하였으나 수출품이 아닌 경우(3점), 수출품목에 대한 특허출원중(2점), 기타 산업재산권 출원중(1점)		
수출활동 수행능력 (20점)	해외마케팅 투자 (5)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해외마케팅 비용의 지출 * 4%이상(5), 4%미만(4), 3%미만(3), 2%미만(2), 1%미만(1)		
	수출준비도 (10)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또는 외국어카탈로그 보유 ○ 해외영업 전담부서가 별도 설치 운영 ○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해외영업 전담자를 보유 ○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중기청 및 유관기관 (중진공, kotra,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개단, 해외전시회 제외) ○ 최근 1년 내 품목 특화된 해외전문 광고지 홍보실적 * 해당 항목당 2점 부여		
	해외시장 개척 활동 (5점)		○ 최근 2년 내 시장개척단 파견 또는 해외전시회 참가 * 1회(1점), 2회(2점), 3회(3점), 4회(4점), 5회 이상(5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기술성 (15점)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5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 (5점), 자체 연구개발조직·인력 보유(3점)	
	연구개발비 투자	5	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 5%이상(5), 4~5%미만(4), 3~4%미만(3), 2~3%미만(2), 2%미만(1)	
	연구개발 실적 및 관리의 적합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여 성공한 경험 ○ 과거 연구개발 결과를 문서화 및 전산화하여 체계적 관리 ○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 ○ 연구설비 보유 및 외부설비 사용계약 등을 통한 활용 가능한 설비를 충분히 보유 ○ 대학 등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 (공동연구, 위탁연구 및 자문 등 활용) . * 해당 항목당 1점가산	
재무평가 (20점)	부채비율 :(부채총계*100)/자본총계	5	80%미만(5), 80~100%미만(4), 100~130%미만(3), 130%이상(2)	
	유동비율 :(유동자산*100)/유동부채	5	150%이상(5), 100~150%미만(4), 50~100%미만(3), 50%미만(2)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5	20%이상(5), 10~20%미만(4), 5~10%미만(3), 5%미만(2)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100)/매출액	5	9%이상(5), 6~9%미만(4), 3~6%미만(3), 3%미만(2)	
혁신성 평가 등		5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및 승인협업 참여기업, 농공상 융합기업은 각각 2점을 가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총 계		105		

-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및 회사소개서는 현장확인
- * 재무건전성 평가가 어려운 기업(업력 2년 이내 신생기업 등)은 항목별 2점 부여

【 별표 3-3 】

수출유망기업 지원사업 세부평가 기준표(서비스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수출 신장 유망 성 (35점)	1. 수출실적	15	50만달러미만(9) 70만달러미만(11점) 100만달러미만(12점) 200만달러미만(15점) 300만달러 미만(12점) 500만달러 미만(9점)	
	2. 수출 신장률	15	○ 전년도 수출액 200만불이상 100%이상(15점), 50%~100% 미만(12점), 10%~50%미만(9점), 10%미만(6점) ○ 전년도 수출액 200만불 미만 100%이상(15점), 70%~100%미만(12점), 40%~70%미만(9점), 10%~40%미만(6점), 10%미만(4점)	
	3. 품질·수출 경쟁력	5	○ 전년도 또는 금년도 국내외 규격인증 GS(굿소프트웨어), SQ(서비스품질우수기업), ISO9001, ISO14000,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상표, 프로그램등록 (항목당 1점) [5점] 5개 이상, [4점] 4개, [3점] 3개, [2점] 2개, [1점] 1개	
	소계	35		
수출 활동 수행 능력 (20점)	1. 해외마케팅 투자	5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해외마케팅 비용의 지출 [5점] 4%이상, [4점] 4%미만, [3점] 3%미만, [2점] 2%미만, [1점] 1%미만	
	2. 수출 준비도	10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또는 외국어카탈로그 보유 ○ 해외영업 전담부서가 별도 설치 운영 ○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해외영업 전담자를 보유 ○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중기청 및 유관기관 (중진공, kotra,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 최근 1년 내 품목 특화된 해외전문 광고지 홍보실적 해당항목당 2점	
	3.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5	○ 전년도 기준 R&D투자비용/총 매출액 [5점] 5% 이상, [4점] 4~5% 미만, [3점] 3~4% 미만, [2점] 2~3% 미만, [1점] 2% 미만	
	소계	20		
서비 스제 공 능력 (25점)	1. 전문인력의 비율	5	○ 전체 전문인력의 총 수/전체 종업원의 총 수 [5점] 70% 이상 [4점] 50% 이상 [3점] 30% 이상, [2점] 10% 이상 [1점] 10% 미만	
	2. 전문인력의 근속 연수	5	○ 전체 전문인력이 해당 기업에서 일한 연수/ 전체 종업원이 해당기업에서 일한 연수 [5점] 70% 이상, [4점] 50% 이상, [3점] 30% 이상, [2점] 10% 이상, [1점] 10% 미만	
	3.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	5	○ 전년도 교육훈련비/전년도 총매출액 [5점] 10% 이상 [4점] 5% 이상 [3점] 3% 이상, [2점] 1% 이상 [1점] 1% 미만	
	4. 고객정보 및 지식관리	5	○ 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을 위한 고객정보 보유 수준, 경영활동에의 활용 정도, 고객정보 분석 및 평가 등의 지식관리 활동을 중심으로 동사의 고객정보 및 지식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변동가능성 등을 활용하고 있는가 [5점] 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을 위한 고객정보 수집, 분석, 활용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고객정보 및 지식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4점] 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을 위한 고객정보 수집, 분석, 활용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객정보 및 지식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3점] 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을 위한 고객정보 수집, 분석, 활용측면 중 다소 미흡한 요소가 있으나, 고객정보 및 지식관리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5. 서비스 차별성			<p>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음</p> <p>[2점] 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을 위한 고객정보 수집, 분석, 활용 측면 중 일부 요소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향후 고객정보 및 지식관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p> <p>[1점] 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을 위한 고객정보 수집, 분석, 활용 측면 중 상당 부분이 취약하여 고객정보 및 지식관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p>	
		5	<p>○ 기존 서비스에 비하여 독창성, 동사의 서비스가 모방 용이성,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등 서비스 차별성은 있는가</p> <p>[5점] 동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독창성(혁신성), 모방성, 신속성, 가격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차별적 요소가 있음</p> <p>[4점] 동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독창성(혁신성), 모방성, 신속성, 가격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차별적 요소가 있음</p> <p>[3점] 서비스의 독창성(혁신성), 모방성, 신속성, 가격경쟁력 등의 일부 요소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동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p> <p>[2점] 서비스의 독창성(혁신성), 모방성, 신속성, 가격경쟁력 등의 일부 요소가 미흡하며, 이로 인해 향후 동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p> <p>[1점] 서비스의 독창성(혁신성), 모방성, 신속성, 가격경쟁력 등의 일부 요소가 취약하여 동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p>	
	소계	25		
재무 평가 (20점)	1. 부채비율	5	<p>○ 전년도 (부채총계*100)/자본총계</p> <p>[5점] 80%미만, [4점] 80~100%미만, [3점] 100~130%미만, [2점] 130%이상</p>	
	2. 유동비율	5	<p>○ 전년도 (유동자산*100)/유동부채</p> <p>[5점] 150%이상, [4점] 100~150%미만, [3점] 50~100%미만, [2점] 50%미만</p>	
	3. 매출액 증가율	5	<p>○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p> <p>[5점] 20% 이상, [4점] 10% 이상, [3점] 5% 이상, [2점] 3% 이상, [1점] 3% 미만</p>	
	4. 매출액 영업 이익률	5	<p>○ 전년도 (영업이익*100)/매출액</p> <p>[5점] 9%이상, [4점] 6~9%미만, [3점] 3~6%미만, [2점] 3%미만</p>	
	소계	20		
혁신성 평가 등	5	<p>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및 승인협업 참여기업, 농공상융합기업은 각각 2점을 가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p>		
소계	5			
합계	105			

-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및 회사소개서는 현장확인
- * 재무건전성 평가가 어려운 기업(업력 2년 이내 신생기업 등)은 항목별 2점 부여
- * 전문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

【 별표 3-4 】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상비 세부평가 기준표(제조업)

지표명	글로벌 시장 성장성(5점)
-----	----------------

[지표개요] 주 생산품목 또는 개발품목의 글로벌 시장 규모 및 향후 성장성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향후 3년 (또는 5년)간 예상성장률을 예측하여, 시장의 성장성 여부를 평가

- 국가 및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관련업종(제품)의 시장상황에 대한 언론보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산업시장 분석 자료 등을 인용하여 해당 시장의 향후 시장성장률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구분	51% 이상	31%~50%	21%~30%	20%미만	10%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공인기관의 자료로 평가하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기업이 분석·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지표명	글로벌 시장경쟁우위수준 (5점)
-----	-------------------

[지표개요] 회사가 갖추고 있는 글로벌 시장경쟁우위 요소를 평가
단, 가격우위의 경우 가격대응력과 더불어 높은 브랜드가치로 인하여 가격가치를 인정 받는 경우도 경쟁력 우위로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① 가격, ② 품질, ③ 서비스, ④ 기술, ⑤ 브랜드력

- ① 가격: 각종 영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 우위 수준을 평가(우위, 열위)
- ② 품질: 국제 품질인증 보유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 수준 등을 확인하여 품질경쟁우위 수준을 평가
- ③ 서비스: 클레임 및 고객불만족 대응 수준, 자체 A/S센터 운영 여부 등으로 서비스 경쟁우위 평가
- ④ 기술력: 기술개발실or연구소 보유 여부, 연구기술 인력의 경력, 기술개발실적 및 적용, 기술 차별적 요소, 생산기술력(3정 5S활동 등)등을 평가
- ⑤ 브랜드력: 국내외 바이어 수준(대기업 등), 자체 브랜드 수출비중 등을 평가

구분	5개 항목이상	4개 항목이상	3개 항목이상	2개 항목이상	1개 항목 이하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2. 평가항목 :기술혁신 및 품질수준 (30점)

지표명 기술의 우수성 (5점)

[지표개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해당기업의 우수기술인증 보유건수를 통한 해당기업의 기술품질을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자사 수출제품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공인된 우수한 기술인증 보유건 수에 따라 평가
- *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기술인증 예시>

기술인증	NEP, 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HT),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각 국가별 기술인증 등
------	---

주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전용 실시권만 보유수로 인정

지표명 품질의 우수성 (5점)

[지표개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해당기업의 우수품질인증 보유 건수를 통한 해당기업의 제품에 대한 품질을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자사 제품에 대한 국내외의 공인

구분	7건 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3건미만	3건미만 1건이상	0건/근가자료 미제출
점수	5	4	3	2	0

< 품질인증 예시>

품질인증	성능인증, GR, K마크, GS, UL, CE,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마크, 신기술농업기계인증, 소방용기계기구우수제품품질인증, 우수산업디자인마크(GD), KS, 우수단체표준인증 등 각 국가별 품질인증 등
------	--

지표명	기술의 전문화/집중도(5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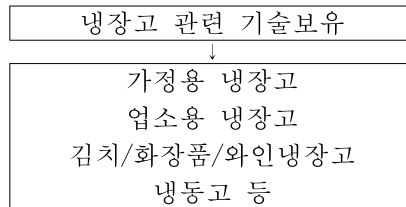
[지표개요]

최근 3년간 수출제품과 기술간 연관성 및 계열성이 있는 상품의 수를 통하여 기술의 전문화 및 집중도를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기술의 전문화/집중도

- 기술 내용이 성능개선 등을 위한 단순아이디어의 제시가 아닌 상당한 기술적 수준보유 여부의 통합검토
- 기술적 수준 판단 시 기술개발 분야의 사전조사 자료 및 기 개발 수행내역 참조
- 해당 기술과 관련한 기술의 연관성 및 계열성을 고려하여 관련 제품의 개발 건수를 파악
 - 예: 냉장고



- 관련기술의 전문성 및 집중도(연관/계열) 근거자료 제출
- 현행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별적 기술개발 내용의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허/SW/공인된 실험자료 등 근거자료제시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0건/근거자료미 제출
점수	5	3	1	0

지표명	기술 및 품질개선 융합능력(5점)
-----	--------------------

[지표개요]

최근 3년간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해 위탁, 전략적 제휴 등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및 품질에 대한 개선, 신제품상품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한 위탁 및 참여 연구기관의 지명도 및 협력연구의 적절성을 종합 검토 하는 것을 전제함.
- 참여 기업/기관의 참여비율이 낮거나, 단지 해당 협력기관의 명성/지명도만을 이용하였는지 파악
 - 해당사항 확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최저점 부여
- 외부기관과의 개선 및 상품화한 기술협력건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근거자료 미제출
점수	5	4	3	2	1	0

지표명	R&D 투자(5점)
-----	------------

[지표개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및 투자금액을 통하여 해당기업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연구개발 및 개선 능력을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사업화 주체(주관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최근 2개년 평균치를 구하여 동 산업평균과 비교하여 평가
- * 2개년 결산자료가 있는 경우 2개년 결산자료에 의해, 1개년 결산자료만 있는 경우 1개년 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text{연구개발투자비율(\%)} = \frac{\text{연구개발비}}{\text{매출액}} \times 100$$

*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당기 개발비-전기 개발비)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개발비 삼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등

구분	10% 이상	7% 이상	5% 이상	3%이상	1%이상	1%미만/근거자료미제출
점수	5	4	3	2	1	0

- * 단, 연구개발비율은 낮으나 연간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5점 부여
- * 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이상 기업은 연구개발비율과 투자금액중 유리한 것을 적용

지표명

기술개발 전담조직(5점)

[지표개요]

R&D 전담 조직의 유무 및 기술인력 현황을 통하여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수행 능력을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해당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R&D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 R&D 전담조직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해 인정
-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현장 확인 결과,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

- * 인적요건 : 기술인력 1명이상
- * 물적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보유

-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 별도 연구공간은 협력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 위치하고 있어도 인정
- * 연구공간에는 기술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기자재, 연구개발 장비 등이 실제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R&D 전담조직 및 인력이 연구공간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
- * 구체적인 기술개발 실적 및 내용(시제품, 시료, 연구관련 기록 등 연구성과물)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기술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5점	4점	3점	2점	1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실제 기술개발 활동 진행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별도의 연구공간 보유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개발인력만 확보

3. 평가항목 : 글로벌마케팅 능력 (40점)

지표명	시장지배력(10점)
-----	------------

[지표개요]

신시장에 대한 개척 능력 및 현재 진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시장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력 평가(5점)

구분	7%이상	6%이하~ 5이상%	4%이하~ 3%이상	2%	1%	근거자료 미제출
점수	5	4	3	2	1	0점

* 해당국 통계청/협회 등의 품목별 시장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한 근거자료 제시

- 최근 3년간 출시된 제품(개량품 포함)의 매출 비중에 따른 지속가능한 시장지배력 수준평가(5점)

구분	매출비중 30%이상	매출비중 20%이상~30%미만	매출비중 10%이상~20%미만	매출비중 5%이상~10%미만	매출비중 5% 미만
점수	5	4	3	2	1

지표명	목표시장에 대한 정보 보유 및 이해 수준(10점)
-----	-----------------------------

[지표개요] 기존 고갱의 요구 사항 및 신규 진입시 필요 정보 취득에 의하여 시장의 요구사항이 정의되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시장정보 보유수준 및 고객의 수요가 반영한 자체 사례 및 수준을 인터뷰로 확인하여 평가

1. 시장 정보 보유 수준 (5점)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근거자료 미제출
점수	5	4	3	2	1	0

- ① 대상국의 시장규모와 성장성, ②대상국의 산업특성, ③대상국의 유통구조 및 접근 경로, ④주력제품의 주요고객, ⑤주요 고객 및 경쟁사 동향

2. 목표시장에서의 요구 사항에 대한 파악 수준 (5점)

- ① 고객(사용자/Agent/딜러)의 수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음.
- ② 각종 시장 조사 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여 시장 요구를 가미하고 있음.
- ③ 고객 및 매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요소별로 고객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음.
- ④ 중점 고객군에 대하여 구성원의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보로 활용하는 수준 임.
- ⑤ 기존 고객 및 중점고객의 조사에 의거하여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제품에 반영하고 있음.

구분	⑤	④	③	②	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지표명

해외마케팅 조직 및 핵심 역량 관리 (10점)

[지표개요]

기업의 글로벌마케팅 전략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마케팅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핵심역량 관리를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1.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구축되어 있는가? (5점)

- ① 전임 담당자가 없이 겸직에 의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짐.
- ② 고객 대응 수준의 해외 영업담당자만 보유
- ③ 다수의 담당자에 의한 해외영업 조직을 갖추고 있음.
- ④ 해외 영업 및 마케팅으로 전문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음.
- ⑤ 전문화된 팀과 전담 임원 및 간부를 보유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구분	⑤	④	③	②	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2. 마케팅 조직 구성원 핵심 역량 관리는? (5점)

* 부서장 및 인사측면의 역량 정의서 유무 확인하고 전년도 기준의 평가서를 확인

- ① 역량의 정의 및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결원 발생시 수시 보충하고 있음.
- ② 구체적인 역량을 구분하지 않고 외국어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음.
- ③ 구체적인 역량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 업무 경력을 우선으로 평가
- ④ 마케팅 및 글로벌의 필요 역량을 사내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음.
- ⑤ 직급이나 직책에 의거한 필요 역량을 정의하고 개인별로 평가하고 있음.

구분	⑤	④	③	②	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지표개요]

목표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의 다양성 및 주요시장에서의 브랜드 구축 수준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유력고객의 확보와 더불어 시장확대를 위한 다양한 채널 확보 여부와 해당 시장에서 기업 및 브랜드 인지도의 형성 여부를 측정 함.

1. 목표시장 접근 채널의 다양성 평가 (5점)

구분	5개이상 충족	4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상	0건/ 근거자료 미제출
점수	5	4	3	2	1	0

① 인터넷 유통채널 판매, ②간접 중간도매(Agent) 판매, ③직접 중간도매(대리점) 판매,
④최종 소매 유통(최종 판매유통)판매, ⑤주요 Target 고객 판매

2. 주요 시장에서의 브랜드 형성수준 (5점)

- ① 자사브랜드가 아닌 판매자 OEM형태로 수출이 이루어 짐
- ② OEM 중심 매출 구성이며, 제품의 브랜드 인식은 낮으나 자사 브랜드로 자사 일부 수출하고 있음.
- ③ 자사 브랜드의 수출비중이 높으며, 실적이 안정적임.
- ④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장기고객(3년이상)이 증가추세 있음.
- ⑤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높고 글로벌 장기고객(3년 이상)이 50% 이상 임.

구분	⑤	④	③	②	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4. 평가항목 : 글로벌 경영 및 관리수준 (20점)

지표명	경영자의 글로벌시장 진출의지(10점)
-----	----------------------

[지표개요]

회사의 수출전략, 타킷시장조사, 해외마케팅 예산확보, 경쟁사 비교분석 자료 등을 통하여 경영자의 해외시장 진출의지를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① 회사의 수출경영전략 수립여부
- ② 해외지사(법인) 설립
- ③ 수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예산 확보
- ④ 국내외 주요 경쟁사 및 바이어에 대한 정보 자료
- ⑤ 주요 해외 타킷시장 조사 자료
- ⑥ 연간 해외 전시회 참가 여부(2회 이상)
- ⑦ 해외 투자유치 실적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지표명	수출지향성(5점)
-----	-----------

[지표개요]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연도별 수출성장성 등의 수출몰입도를 평가하여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수출지향성을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 재무제표 상의 수출금액과 직 수출금액을 비교하여 비중 산정

$$\text{수출비중(\%)} = \frac{\text{'10년 직수출액}}{\text{'10년 매출액}} \times 100$$

구분	70% 이상	51%~70%	31%~50%	10%~30%	10% 미만
점수	2.5	2	1.5	1	0점

- ② 수출성장성 : 전년('09년)대비 '10년 수출금액을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성장성을 평가 단, 11년 1~11월 수출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10년 1~11월 수출실적과 비교하여 평가

$$\text{수출성장성(\%)} = \left(\frac{\text{'10년 직수출액} - \text{'09년 직수출액}}{\text{'09년 직수출액}} \right) \times 100$$

구분	50% 이상	31%~50%	21%~30%	10%~20%	10% 미만
점수	2.5	2	1.5	1	0점

지표명

전사적 목표 및 관리 수준(5점)

[지표개요]

글로벌 마케팅 수행을 위한 전사적 목표 및 관리 수준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글로벌 전략이 사내 각 부문으로 확산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각 부문의 성과측정 지표(KPI)유무와 관리 수준을 확인 평가

- ① 매출액 목표만 존재하고 있음.
- ② 영업부문 중심의 중점과제가 설정되어 있음.
- ③ 부문별(연구/생산)로 연도별 과제와 목표가 명시 되어 있음.
- ④ 부문별(연구/생산)로 연도별 과제와 목표에 대한 관리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 ⑤ 부문별(연구/생산)로 연도별 과제와 목표에 대한 관리지표가 설정되어 있고, 진척이 관리되고 있음.

구분	⑤	④	③	②	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별표 3-5 】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세부평가 기준표(서비스업)

1. 평가항목 : 시장성장 매력도 (10점)

지표명	글로벌 시장 성장성(5점)
-----	----------------

[지표개요] 주 생산품목 또는 개발품목의 글로벌 시장 규모 및 향후 성장성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향후 3년 (또는 5년)간 예상성장률을 예측하여, 시장의 성장성 여부를 평가

- 국가 및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관련업종(제품)의 시장상황에 대한 언론보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산업시장 분석 자료 등을 인용하여 해당 시장의 향후 시장성장률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구분	51% 이상	31%~50%	21%~30%	20%미만	10%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공인기관의 자료로 평가하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기업이 분석·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지표명	글로벌 시장경쟁우위수준 (5점)
-----	-------------------

[지표개요] 회사가 갖추고 있는 글로벌 시장경쟁우위 요소를 평가

단, 가격우위의 경우 가격대응력과 더불어 높은 브랜드가치로 인하여 가격가치를 인정 받는 경우도 경쟁력 우위로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① 가격, ② 품질, ③ 서비스, ④ 기술, ⑤ 브랜드력

- ① 가격: 각종 영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 우위 수준을 평가(우위, 열위)
- ② 품질: 국제 품질인증 보유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 수준 등을 확인하여 품질경쟁우위 수준을 평가
- ③ 서비스: 클레임 및 고객불만족 대응 수준, 자체 A/S센터 운영 여부 등으로 서비스 경쟁우위 평가
- ④ 기술력: 기술개발실or연구소 보유 여부, 연구기술 인력의 경력, 기술개발실적 및 적용, 기술 차별적 요소, 생산기술력(3정 5S활동 등)등을 평가
- ⑤ 브랜드력: 국내외 바이어 수준(대기업 등), 자체 브랜드 수출비중 등을 평가

구분	5개 항목이상	4개 항목이상	3개 항목이상	2개 항목이상	1개 항목 이하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2. 평가항목 : 서비스(기술) 혁신 및 품질수준 (30점)

지표명	서비스 지원기술의 우수성 (5점)
-----	--------------------

[지표개요] 우수한 서비스 지원기술의 보유건수를 통한 해당기업의 서비스 능력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해당 서비스상품과 관련한 서비스 지원기술(소프트웨어/설계 및 감리기술/고급 통계 및 분석기술/엔지니어링/실험조사기술/컨설팅기술 등)의 보유건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
- * 관련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증자료 등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기술 증빙자료 제출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서비스 기술 예시>

서비스기술 인증	프로그램 등록증,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각 국가별 기술인증 등
-------------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전용 실시권만 보유수로 인정

지표명	우수 서비스 품질인증 (5점)
-----	------------------

[지표개요]

서비스(기술) 품질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해당 인증의 보유건수를 통하여 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자사 제품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공인된 우수한 기술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건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
-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시에만 인정

구분	3개이상 보유	2개 보유	1개 보유	미보유/ 근거자료미제출
점수	5	3	1	0

< 품질인증 예시>

서비스 품질인증	한국서비스품질인증, ISO9000
-------------	--------------------

지표명

서비스(기술)의 차별성(5점)

[지표개요] 서비스(기술)의 독창성(혁신성), 모방 용이성,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등을 중심으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한 현재 서비스의 차별성 수준을 검토하여 종합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기존 서비스(기술)에 비하여 독창성 유무 및 서비스 모방의 용이성, 서비스의 신속성,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등 서비스(기술) 차별성적 요소를 인터뷰

- ① 차별화된 서비스(기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② 서비스(기술)의 독창성(혁신성), 신속성, 가격경쟁력 등의 일부 요소가 취약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③ 서비스(기술)의 독창성(혁신성), 신속성, 가격경쟁력 등의 일부 요소가 미흡하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제약가능성 있음.
- ④ 서비스(기술)의 독창성(혁신성), 신속성, 가격경쟁력 등의 일부 요소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서비스(기술)에 대한 차별화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
- ⑤ 서비스(기술)의 독창성(혁신성), 신속성, 가격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차별적 요소가 있음.
- ⑥ 서비스(기술)의 독창성(혁신성), 신속성, 가격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차별적 요소가 있음.

구분	⑥	⑤	④	③	②	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지표명

서비스(기술) 표준성(효율성)(5점)

[지표개요] 서비스(기술)의 표준화 정도와 이에 따른 효율성 정도를 파악하고 서비스(기술) 품질 수준을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서비스(기술)에 대해 표준의 설정 유무와 이행정도, 효율성 수준, 품질 수준을 서면자료와 인터뷰로 확인하여 아래 각 단계별로 평가

- ① 서비스(기술) 표준화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서비스(기술) 품질수준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 ② 서비스(기술) 표준화, 효율성 향상정도, 품질 수준 파급효과 중 상당 부분이 취약하여 서비스(기술) 품질수준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 ③ 서비스(기술) 표준화, 효율성 향상정도, 품질 수준 파급효과 중 일부 요소가 부족하며 서비스(기술) 품질수준 유지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④ 서비스(기술) 표준화, 효율성 향상정도, 품질 수준 파급효과 중 일부 요소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는 않으나 서비스(기술) 품질수준 유지에 지장은 없음.
- ⑤ 서비스(기술) 표준화 정도가 양호 하며, 표준화로 인한 효율성의 향상정도가 비교적 높고, 서비스(기술) 품질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비교적 높음.
- ⑥ 서비스(기술) 표준화 정도가 매우 우수 하며, 표준화로 인한 효율성의 향상정도가 높고, 서비스(기술) 품질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음.

구분	⑥	⑤	④	③	②	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지표명	서비스(기술) 및 품질개선 융합능력(5점)
-----	-------------------------

[지표개요]

서비스(기술) 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해 위탁, 전략적 제휴 등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기술) 및 품질에 대한 개선, 신제품 상품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서비스(기술) 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한 위탁 및 참여 연구기관의 지명도 및 협력연구의 적절성을 종합 검토하는 것을 전제함.
- 참여 기업/기관의 참여비율이 낮거나, 단지 해당 협력기관의 명성/지명도만을 이용하였는지 파악 - 해당사항 확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최저점 부여
- 외부기관과의 개선 및 상품화한 기술협력건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근거자료 미제출
점수	5	4	3	2	1	0

지표명	서비스(기술) R&D 투자(5점)
-----	--------------------

[지표개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및 투자금액을 통하여 해당기업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연구개발 및 개선 능력을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사업화 주체(주관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최근 2개년 평균치를 구하여 동 산업평균과 비교하여 평가
- * 2개년 결산자료가 있는 경우 2개년 결산자료에 의해, 1개년 결산자료만 있는 경우 1개년 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text{연구개발투자비율(\%)} = \frac{\text{연구개발비}}{\text{매출액}} \times 100$$

- *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당기 개발비-전기 개발비)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 · 연구비, 개발비 삼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등

구분	10% 이상	7% 이상	5% 이상	3%이상	1%이상	1%미만/근거 자료미제출
점수	5	4	3	2	1	0

- * 단, 연구개발비율은 낮으나 연간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5점 부여
- * 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이상 기업은 연구개발비율과 투자금액중 유리한 것을 적용

3. 평가항목 : 글로벌마케팅 능력 (40점)

지표명	시장지배력(10점)
-----	------------

[지표개요]

신시장에 대한 개척 능력 및 현재 진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시장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력 평가(5점)

구분	7%이상	6%이하~ 5이상%	4%이하~ 3%이상	2%	1%	근거자료 미제출
점수	5	4	3	2	1	0점

* 해당국 통계청/협회 등의 품목별 시장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한 근거자료 제시

- 최근 3년간 출시된 제품(개량품 포함)의 매출 비중에 따른 지속가능한 시장지배력 수준평가(5점)

구분	매출비중 30%이상	매출비중 20%이상~30%미만	매출비중 10%이상~20%미만	매출비중 5%이상~10%미만	매출비중 5% 미만
점수	5	4	3	2	1

지표명	목표시장에 대한 정보 보유 및 이해 수준(10점)
-----	-----------------------------

[지표개요] 기존 고객의 요구 사항 및 신규 진입시 필요 정보 취득에 의하여 시장의 요구사항이 정의되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시장정보 보유수준 및 고객의 수요가 반영한 자체 사례 및 수준을 인터뷰로 확인하여 평가

1. 시장 정보 보유 수준 (5점)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근거자료 미제출
점수	5	4	3	2	1	0

- ① 대상국의 시장규모와 성장성, ②대상국의 산업특성, ③대상국의 유통구조 및 접근 경로, ④주력제품의 주요고객, ⑤주요 고객 및 경쟁사 동향

2. 목표시장에서의 요구 사항에 대한 파악 수준 (5점)

- ① 고객(사용자/Agent/딜러)의 수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음.
- ② 각종 시장 조사 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여 시장 요구를 가미하고 있음.
- ③ 고객 및 매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요소별로 고객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음.
- ④ 중점 고객군에 대하여 구성원의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보로 활용하는 수준 임.
- ⑤ 기존 고객 및 중점고객의 조사에 의거하여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제품에 반영하고 있음.

구분	⑤	④	③	②	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지표명

해외마케팅 조직 및 핵심 역량 관리 (10점)

[지표개요]

기업의 글로벌마케팅 전략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마케팅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핵심역량 관리를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1.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구축되어 있는가? (5점)

- ① 전임 담당자가 없이 겸직에 의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짐.
- ② 고객 대응 수준의 해외 영업담당자만 보유
- ③ 다수의 담당자에 의한 해외영업 조직을 갖추고 있음.
- ④ 해외 영업 및 마케팅으로 전문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음.
- ⑤ 전문화된 팀과 전담 임원 및 간부를 보유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구분	⑤	④	③	②	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2. 마케팅 조직 구성원 핵심 역량 관리는? (5점)

* 부서장 및 인사측면의 역량 정의서 유무 확인하고 전년도 기준의 평가서를 확인

- ① 역량의 정의 및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결원 발생시 수시 보충하고 있음.
- ② 구체적인 역량을 구분하지 않고 외국어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음.
- ③ 구체적인 역량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 업무 경력을 우선으로 평가
- ④ 마케팅 및 글로벌의 필요 역량을 사내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음.
- ⑤ 직급이나 직책에 의거한 필요 역량을 정의하고 개인별로 평가하고 있음.

구분	⑤	④	③	②	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지표개요]

목표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의 다양성 및 주요시장에서의 브랜드 구축 수준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유력고객의 확보와 더불어 시장확대를 위한 다양한 채널 확보 여부와 해당 시장에서 기업 및 브랜드 인지도의 형성 여부를 측정 함.

1. 목표시장 접근 채널의 다양성 평가 (5점)

구분	5개이상 충족	4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상	0건/ 근거자료 미제출
점수	5	4	3	2	1	0

① 인터넷 유통채널 판매, ②간접 중간도매(Agent) 판매, ③직접 중간도매(대리점) 판매,
④최종 소매 유통(최종 판매유통)판매, ⑤주요 Target 고객 판매

2. 주요 시장에서의 브랜드 형성수준 (5점)

- ① 자사브랜드가 아닌 판매자 OEM형태로 수출이 이루어 짐
- ② OEM 중심 매출 구성이며, 제품의 브랜드 인식은 낮으나 자사 브랜드로 자사 일부 수출하고 있음.
- ③ 자사 브랜드의 수출비중이 높으며, 실적이 안정적임.
- ④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장기고객(3년이상)이 증가추세 있음.
- ⑤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높고 글로벌 장기고객(3년 이상)이 50% 이상 임.

구분	⑤	④	③	②	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4. 평가항목 : 글로벌 경영 및 관리수준 (20점)

지표명	경영자의 글로벌시장 진출의지(10점)
-----	----------------------

[지표개요]

회사의 수출전략, 타킷시장조사, 해외마케팅 예산확보, 경쟁사 비교분석 자료 등을 통하여 경영자의 해외시장 진출의지를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① 회사의 수출경영전략 수립여부
- ② 해외지사(법인) 설립
- ③ 수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예산 확보
- ④ 국내외 주요 경쟁사 및 바이어에 대한 정보 자료
- ⑤ 주요 해외 타킷시장 조사 자료
- ⑥ 연간 해외 전시회 참가 여부(2회 이상)
- ⑦ 해외 투자유치 실적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지표명	수출지향성(5점)
-----	-----------

[지표개요]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연도별 수출성장성 등의 수출몰입도를 평가하여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수출지향성을 평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 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 재무제표 상의 수출금액과 직 수출금액을 비교하여 비중 산정

$$\text{수출비중(\%)} = \frac{\text{'10년 직 수출액}}{\text{'10년 매출액}} \times 100$$

구분	70% 이상	51%~70%	31%~50%	10%~30%	10% 미만
점수	2.5	2	1.5	1	0점

- ② 수출성장성 : 전년('09년)대비 '10년 수출금액을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성장성을 평가 단, 11년 1~11월 수출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10년 1~11월 수출실적과 비교하여 평가

$$\text{수출성장성(\%)} = \left(\frac{\text{'10년 직 수출액}}{\text{'09년 직 수출액}} \right) \times 100 - \left(\frac{\text{'09년 직 수출액}}{\text{'08년 직 수출액}} \right) \times 100$$

구분	50% 이상	31%~50%	21%~30%	10%~20%	10% 미만
점수	2.5	2	1.5	1	0점

지표명

전사적 목표 및 관리 수준(5점)

[지표개요]

글로벌 마케팅 수행을 위한 전사적 목표 및 관리 수준은?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 글로벌 전략이 사내 각 부문으로 확산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각 부문의 성과측정 지표(KPI)유무와 관리 수준을 확인 평가

- ① 매출액 목표만 존재하고 있음.
- ② 영업부문 중심의 중점과제가 설정되어 있음.
- ③ 부문별(연구/생산)로 연도별 과제와 목표가 명시 되어 있음.
- ④ 부문별(연구/생산)로 연도별 과제와 목표에 대한 관리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 ⑤ 부문별(연구/생산)로 연도별 과제와 목표에 대한 관리지표가 설정되어 있고, 진척이 관리되고 있음.

구분	⑤	④	③	②	①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별표 4】

수출역량강화사업 세부사업별 성과목표

분야	세부사업별	성과목표	비고
① 수출교육	무역실무 기초과정	교육 수료증	
	온라인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국제무역전문가 과정		
	환리스크 관리과정		
35 ②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전자 카다로그	사업결과물 평가위원회 평가	
	외국어 종이 카다로그		
	외국어 동영상		
	외국어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③ 해외 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 시장조사	유효인콰이어리 10건 이상 수출 전년대비 2%이상 또는 지원금의 2배 증가	①~④번 중 1건만 해당되도 인정
	해외 심층 시장조사	유효인콰이어리 25건 이상 수출 전년대비 10% 이상 또는 지원금의 10배 증가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①유효 인콰이어리 25건 이상 수출 전년대비 10%이상 또는 지원금의 10배 증가 ②조달시장진출 1건 이상 ③유통채널 진출 1건 이상 ④현지 연락사무소 또는 법인설립	
	온라인 수출지원	유효 인콰이어리 15건 이상 수출 전년대비 2% 이상 또는 지원금의 2배 증가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	서비스 활용여부	
	해외신용조사	신용조사결과	
	국내외 홍보 전문지를 활용한 해외에 홍보	유효인콰이어리 5건 이상 수출 전년대비 2%이상 또는 지원금의 2배 증가	
	공중파 해외광고(arirang TV)	방송여부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보험가입여부	
	④ 해외 시장 개척활동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유효 인콰이어리 5건이상 수출 전년대비 2%이상 또는 지원금의 2배 증가	
검색엔진 마케팅		유효 인콰이어리 25건이상 홈페이지 방문횟수 200%이상, 키워드 2개이상 첫페이지 등재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수출 전년대비 5%이상 또는 지원금의 3배 증가	
글로벌 브랜드 육성		기업 만족도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만족도	
자율마케팅 프로젝트		기업 만족도	
홈쇼핑 동영상 제작		수출 전년대비 5%이상 또는 지원금의 3배 증가	

* 인콰이어리 유효성 판단 : 중진공 “글로벌 바이어 국내소싱 사업”의 수출 전문가 활용

【별표 5】

수출역량강화사업 세부사업별 정산 증빙서류

- ※ 각 세부사업별 제출 공통사항 :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거래면 사본
- ◆ 개방형과제 : 해외상품홍보(해외발간 해외홍보지)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으로 참여기업이 정산증빙서류 제출하고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 ◆ 지정형과제 : 이를 제외한 지원으로 참여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수행기관에 지급하고 수행기관은 정산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행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

분야	세부사업내용	수행증빙자료
수출교육	지정수행기관 지정교육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참가신청서 사본 ◦ 수료증 사본
홍보디자인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전자카탈로그 ◦ 외국어 종이카탈로그 ◦ 외국어 동영상 ◦ 외국어 포장 디자인 ◦ 제품디자인개발 	(한국디자인진흥원 별도 공지)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심층)시장조사 ◦ 전자무역서비스 ◦ 해외신용조사 ◦ 해외진출전략컨설팅 ◦ 중소기업플러스보험 ◦ 온라인 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사본 또는 계약서사본 ◦ 제공된 상세내역(정보) 등 지원사실 입증자료 (서비스제공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상품홍보 ◦ 공중파 해외광고(<i>arirang TV</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서 사본 ◦ 홍보지사본(표지+기업광고면) * 아리랑 TV는 동영상CD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서사본
시장개척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신청서사본(부스, 장치비용확인가능) ◦ 참가입증자료(전시회 디렉토리 사본, 사진 등) ◦ 전시회참가 보고서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사본 또는 계약서사본 ◦ 세금계산서사본 또는 은행발행 거래명세서 사본 ◦ 지원내역 확인 가능자료(서비스제공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엔진 마케팅 	(중소기업진흥공단 별도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브랜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영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투자 마케팅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쇼핑 동영상 제작 	